중국산 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6-4호)

2017. 5. 19.

무 역 위 원 회

무역위원회 의결서

2017. 5. 19.

의결 제2017-15호

조사번호 : 구제 23-2016-4호

안 건 명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최종판정

신 청 인 : 제일씨앤피(주)

피신청인: 중국의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이하 "코 닥그래픽"),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이하 "보 시카"),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이하 "화광그래픽") 및 그 관계사1), 그 밖의 공급자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 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 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한다.
- 2.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결정한다.

¹⁾ 생산자 :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이하 "화광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이하 "종인"), 판매자 : 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 Beijing Keyin Modern Printing Technology Co., Ltd., Jiangsu Baoli Printing Equipment Co., Ltd.

- 코닥그래픽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86%
- 보시카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11%
- 화광그래픽, 화광바오리, 종인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21%
- 그 밖의 공급자 : 8.78%

이 유

제일씨앤피(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16.8.5. 신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조사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이라 한다)은 신청인,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다 음

I. 배경

신청인은 '16.8.5.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16.9.8.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제일씨앤피(주), (주)정도알미늄, 아그파코리아(주), 세일피에스 (주) 4개사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해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신청서 상 신청인이 제시한 조사대상물품의 알려진 공급자는 화광그래픽 등 9개사이나,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상 대한국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코닥그래픽, 보시카, 화광그래픽을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조사실은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를 대상으로 덤핑조사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주)에이제이금속 등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 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의 명칭은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로, 조사범위는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이며,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하였다.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관세품목분류번호는 HSK 3701.30.9100이며, 옵셋인 쇄의 소모품으로 사용된다.

조사대상물품은 탈지, 전해연마, 양극산화, 봉공, 코팅,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자들도 동일한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물품은 대부분 국내 수입상이 수입하여 수요자(최종 소비자 또는 중간 유통상)에게 판매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보고서2)에 의하면, 신청인은 예비판정에서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더블레이어판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과 수입자는 프로세스프리판 (Process-free Plate)과 써멀판(Thermal Plate)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더블레이어판의 조사대상물품 제외로 싱글레이어판(Single-layer Plate) 수입이 더블레이어판 수입으로 일부 전환될 수도 있으나, 더블레이어판이 싱글레이어판에 비해 내쇄력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고, UV잉크인쇄, 신문인쇄 등에 강점이 있으며, 신청인이 더블레이어판을 생산한 실적이 없고, 생산을위해서는 2차 코팅 및 건조설비가 필요하여, 설비의 제작・설치 및 안정적인 제품 생산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판정과 같이 조사범위에서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프로세스프리판 수입의 대부분이 더블레이어판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프로세스프리판을 시험생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이 생산준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프로세스프리판을 조사대상물품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써멀판은 신청인이 생산·판매한 실적이 있으므로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2. 국내동종물품

조사보고서³⁾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기능, 용도,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측은 국내생산품의 품질이 조사대상물품에 비해 미흡하여 대체에 애로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내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일부 수요자는 피신청인측과 동일한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²⁾ 조사보고서 pp.4~5

³⁾ 조사보고서 pp.7~10

반면, 신청인측은 두 물품 간 품질에 큰 차이는 없으며 상호 대체가능하고 경쟁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품질 시험 결과4)를 제출하였고, 일부 수요자는 두 물 품 가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일부 수요자가 두 물품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시장에서는 두 물품 간 품질·가격 등을 비교하여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물품은 상호 대체 사용 가능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의 동종물품인 것으로 판단한다.

Ⅲ. 국내산업의 범위

조사보고서5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제일씨앤피(주), (주)정도알미늄, 아그파코리아(주) 및 세일피에스(주) 4개사6이며, 조사실은 4개사 모두에게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인 제일씨앤피(주) 1개사만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제일씨앤피(주)가 차지하는 동종물품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40~50% 범위 내이며, 조사실은 제일씨앤피(주) 1개사를 대상으로 산업피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WTO 협정 4.1조의 요건기에 부합하므로, 국내산업의 대표

⁴⁾ 신청인과 중국 로컬기업의 CTCP판과 써멀판이 모두 서로 해상도, 망점재현도, 광감도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코닥, 아그파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써멀판의 경우 망점재현도, 해상도가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신청인은 이러한 정도는 작품사진 인쇄 등 특수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인쇄용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라고 주장함

⁵⁾ 조사보고서 pp.11~13

⁶⁾ 아그파코리아(주)는 '15년 8월에 국내공장을 폐쇄하였으며, ㈜정도알미늄은 '17년 5월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임

⁷⁾ WTO 분쟁 사례(브라질산 가금류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반덤핑조치)에서 패널이 국내산업의 범위에 관한 WTO 협정 4.1조에서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부분(a major proportion)은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패널은 'the majority(과반수)'와는 달리, 'a majority'는 2 이상 복수의 산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과반수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고 해석하면서, 아르헨티나가 국내산업으로 정의한 업체의 총 생산량이 아르헨티나 국내총 생산량의 46%이어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WTO 협정에 위반되었다고 한 브라질의주장을 기각하였음(WTO DS 241, 2003. 5. 19)

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IV. 최종덤핑률

1. 산정결과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실은 중국의 조사대상공급자인 코닥그래픽, 보시카, 화광그래픽 및 그 관계사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사용하여 각각 5.86%, 9.11%, 10.32%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8.78%의 최종덤핑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최종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대로 조사대상공급자별 최종덤핑률을 결정한다.

2. 산정근거

가. 코닥그래픽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코닥그래픽 및 판매관련 관계사인 Kodak (China) Investment Company Limited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제출된 답변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 덤핑가격,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물품통제코드(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인쇄판의 종류, 두께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조사실이 제시한 CCN에 대해 이미지 면의 처리방식, 코팅면의 겹수, 민감도, 해상도를 추가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사실은 타당 성을 인정하고 이를 CCN에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

⁸⁾ 조사보고서 p.15

⁹⁾ 조사보고서 pp.16~22

교하였다.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내수판매물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xx%로서 물량 충분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대한국 수출모델과 비교되는 xx개 모델 중 내수판매물량 충분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xx개 모델은 통상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판매목적이므로 재판매한 가격을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고, 별도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결과 원가미만 판매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20% 미만인 경우 에는 전체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xx개 모델 중 xx개 모델에 대해서는 통상거래가격을, 나머지 xx개 모델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위해 내륙운반비, 보험료, 창고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간접판매비를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으며, 은행수수료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지않았고, 간접판매비는 산정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특수관계자인 한국코닥(주)에 수출한 경우 한국코닥(주)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구성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였고, 한국의 비관계사인 무역상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수출한 경우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한국내 운반비, 핸들링비용, 리베이트, 창고료, 절단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간접판매비, CEP 이윤, 관세, 해상운반비, 중국내 운반비, 증치세를 조정요소로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으며, CEP 이윤과 증치세 차이는 산정오류를 수정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피신청인이 과세가격(CIF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하여 5.86%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나. 보시카

조사보고서¹⁰)에 의하면, 보시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보시카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 덤핑가격,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물품통제코드(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인쇄판의 종류, 두께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피신청인은 조사실이 제시한 CCN에 대해 이미지 면의 처리 방식, 코팅면의 겹수, 민감도, 해상도를 추가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사실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CCN에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내수판매물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xx%로서 물량 충분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대한국 수출모델과 비교되는 xx개 모델 중 내수판매물량 충분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xx개 모델은 통상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의 내수판매거래는 모두 비관계사와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결과 원가미만 판매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적용하였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원가미만판매 검증과 관련하여, 생산원가 산정 시 제조원가 계산오류를 수정하였고, 조사대상물품 생산 판매와 관련 없는 이자수익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xx개 모델 중 xx개 모델에 대해서는 통상거래가격을, 나머지 xx개 모

¹⁰⁾ 조사보고서 pp.23~28

델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신용비용을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내륙운반비,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핸들링 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증치세를 조정요소로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다.

과세가격은 피신청인이 과세가격(CIF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하여 9.11%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 화광그래픽 및 그 관계사

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화광그래픽 및 그 관계사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실은 화광그래픽 및 그 관계사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 덤핑가격,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물품통제코드(CCN) 분류기준으로 등급, 인쇄판의 종류, 두께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피신청인은 조사실이 제시한 CCN에 대해 이미지 면의 처리 방식, 코팅면의 겹수, 민감도, 해상도를 추가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사실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CCN에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내수판매물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¹¹⁾ 조사보고서 pp.29~35

xx%로서 물량 충분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대한국 수출모델과 비교되는 xx개 모델 모두 검증을 통과하였다.

피신청인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판매목적이므로 재판매한 가격을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고, 별도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결과 원가미만 판매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적용하였고, 20% 미만인 경우에 는 전체 거래 건을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원가미만판매 검증과 관련하 여, 생산원가 산정 시 조사대상물품 생산 판매와 관련없는 투자수익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xx개 모델 모두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륙운반비, 창고료, 신용비용을 정상가격에서 조정하였으며, 기타할인은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고, 창고료 계산오류는 수정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내륙운반비,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핸들링 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증치세를 조정요소로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다.

과세가격은 피신청인이 과세가격(CIF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조사실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하여 10.32%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라. 그 밖의 공급자

조사보고서12)에 의하면,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65조제2항

¹²⁾ 조사보고서 p.36

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8.78%의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였다.

V.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유무

1. 덤핑물품13)의 수입물량과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 '15년 xx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0%, 16.8%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13년 부터 '15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연평균 15.9% 증가하였다.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3년 xx%에서 '14년 xx%, '15년 xx%로 전년대비 각각 0.1%p, 3.4%p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5%p 상승한 반면, 동종물품¹⁵⁾의 시장점유율은 '13년 xx%에서 '14년 xx%, '15년 xx%로 전년대비 각각 1.0%p, 3.0%p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4.0%p 하락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¹⁶)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3년 xx천원에서 '14년 xx천원, '15년 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4%, 6.1%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8.3% 하락하였다.

¹³⁾ 덤핑률 조사에서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하 이 의결서에서 조사대 상물품에 대해 '덤핑물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관세법 상의 표현과도 일치함)

¹⁴⁾ 조사보고서 pp.37~39

¹⁵⁾ 이하 이 의결서에서 '동종물품'이란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동종물품을 말함

¹⁶⁾ 조사보고서 p.40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3년 xx천원에서 '14년 xx천원, '15년 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 8.5%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0% 하락하였다.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에 비해 '13년 xx천원이 높았으나, '14년에는 xx천원, '15년에는 xx천원만큼 낮아, 덤핑물품은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13년 xx%에서 '14년 xx%, '15년 xx%로 하락하는 등 '14년 이후 동종물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더 큰폭으로 하락하여, '14년 이후에는 덤핑물품이 동종물품보다 저가 판매되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한다.

한편, 덤핑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수입자의 이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수입자측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같은 거래단계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국 내생산자가 동종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가격과 해외 공급자가 덤핑물품을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입자의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조사보고서¹⁷)에 의하면, 옵셋인쇄판 종류별로 물량과 가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덤핑물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증가하고 동종물품의 판매량이 감소(PS판, 써멀판)하거나 시장점유율이 하락(CTCP판)하였으므로,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 물량 및 가격에 공히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쇄판 종류별로도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 물량 및 가격에 공히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여부 검토

¹⁷⁾ 조사보고서 pp.43~47

가.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¹⁸⁾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총출하량은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나, '15년에는 xx톤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7%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국내판매량은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나, '15년에는 xx톤으로 전년대비 8.4%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 '15년 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2.2%, 7.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9.9%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으로 전년대비 41.1% 감소하였으나, '15년에는 xx톤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나.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¹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3년 xx%에서 '14년 xx%, '15년 xx%로 전년대비 각각 1.0%p, 3.0%p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4.0%p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3년 xx%에서 '14년 xx%, '15년 xx%로 전년대비 각각 0.1%p, 3.4%p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5%p 상승하였다.

다.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연간 생산능력은 '13년과 '14년 에는 xx톤이었으나, '15년에는 xx톤으로 증가하였는데, '15년에 생산능력이 증가

¹⁸⁾ 조사보고서 pp.49~50

¹⁹⁾ 조사보고서 p.51

²⁰⁾ 조사보고서 pp.51~52

한 것은 국내산업이 '15년 9월에 신규 투자한 생산 설비 제2호기(이하 "신규생산설비") 2개월 분의 생산능력 xx톤이 합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은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으나, '15년에는 xx톤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 가동률은 '13년 xx%에서 '14년 xx%로 전년대비 5.4%p 상승하였으나, '15년에는 xx%로 전년대비 7.2%p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8%p 하락하였다.

라. 가격 및 제조원가

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3년 xx천원에서 '14년 xx천원, '15년 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 8.5%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0% 하락하였다.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13년 xx천원에서 '14년 xx천원으로 전년대비 4.3% 하락하였고, '15년에는 xx천원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3% 하락하였다. '15년도에 제조원가가 상승한 것은 동년도 알루미늄 코일의 구입가격이 5.1% 하락하였으나, 신규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 xx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사실은 신규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우의 국내산업 경영지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므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국내산업의 피해지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신규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우 '15년도 톤당 제조원가는 xx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원가의 하락폭보다 여전

²¹⁾ 조사보고서 pp.52~55

히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하락폭(8.5%)이 더 컸다.

마. 이윤

조사보고서²²⁾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3년 xx백만원에서 '14년 xx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 하락하였고, '15년에는 xx백만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3년 xx%에서 '14년 xx%로 1.2%p하락하였고, '15년에는 xx%로 적자 전환되었다.

신규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우 국내산업의 '15년도 영업이익은 xx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5.8% 감소하였으며, 동년도 영업이익률은 xx%로 하락하여 동년도 동종업계의 평균영업이익률인 4.6%보다 하회하였다.

바. 기타 주요 지표

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3년 xx 백만원에서 '14년 xx백만원, '15년 xx백만원으로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였고, 신규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우에도 현금흐름은 '15년도에 xx백만원으로 순유출되어, 전년대비 순유출 규모가 여전히 확대되었다.

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간 평균고용 인원은 '13년 xx명에서 '14년 xx명, '15년 xx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3.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2% 감소하였다.

조사보고서²⁵)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1인당 매출액은 '13년 xx백만원에서 '14년 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15년에는 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2% 감소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는 '13년 xx백만원에서 '14년 xx백만원, '15년 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1%, 26.2%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2% 감소하였다.

²²⁾ 조사보고서 p.55

²³⁾ 조사보고서 p.56

²⁴⁾ 조사보고서 p.57

²⁵⁾ 조사보고서 p.58

조사보고서26)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14년 xx백만원, '15년 xx백만원으로 이는 신규생산설비를 위한 투자이었고, 이를 통해 국내산업은 생산능력을 '14년 xx톤에서 '15년 xx톤으로 확충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는 '14년 xx백만원, '15년 xx백만원으로서 주로 감광액 개발에 대한 투자이었다.

조사보고서27)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여 성장성이 악화되었고, 투자수익률은 '13년 xx%에서 '14년 xx%, '15년 xx%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자본 조달능력이 악화되었다.

사. 소결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증가 및 판매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판매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재고가 증가하고, 가동률 및 영업이익이 하락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현금흐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1인당 매출액과 1인당부가가치가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악화되었으며, 내수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성장성이 악화되었고, 투자수익률이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자본조달능력이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한다.

3. 덤핑물품 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²⁸⁾에 의하면, 기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하 "기타국물품)의 물량은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 '15년 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8.2%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은 '13년 xx%, '14년 xx%, '15년 xx%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0.5%p 상승하였으며, 기타국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3년 xx천원, '14년 xx천원, '15년 xx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9.9% 하락하였다.

위원회는 기타국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이 xx~xx%대로

²⁶⁾ 조사보고서 p.59

²⁷⁾ 조사보고서 p.59~60

²⁸⁾ 조사보고서 p.67

크지 않고 기타국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xx% 이상 고가이었으므로, 기타국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에 미친 영향은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에 미친 영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조사보고서29)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13년 xx톤에서 '14년 xx톤, '15년 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4.8%, 11.9%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3% 증가하였으므로, 위원회는 국내소비 변화가 국내산업의 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조사보고서30)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코일의 톤당 구입가격은 '13년 xx천원, '14년 xx천원, '15년 xx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6% 하락하였으므로, 위원회는 알루미늄 코일의 구입가격 변동이 국내산업의 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4. 종합평가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덤핑물품은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판매, 시장점 유율,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현금흐름, 생산성, 성장성, 투자수익률, 자본조달능 력 등에 관한 경영지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타국물품의 수입, 국내소비,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코일의 구입 가격 변동 등 덤핑물품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의 피해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²⁹⁾ 조사보고서 p.68

³⁰⁾ 조사보고서 p.68

VI.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및 적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결정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위원회는 산업피해구준 산정시 조사보고서³¹)의 2방법을 적용하고 최근 연도인 '15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계산된 10.21%를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적용한다.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은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최소부과원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수준과 각 공급자별로 산정된 덤핑률을 비교하여 낮은 율을 각 공급자별 적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으로 결정한다.

적 용 법 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제32조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6조,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등

³¹⁾ 조사보고서 p.69